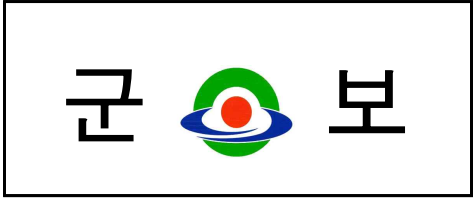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725호 2026. 8. 13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-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751호)
-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752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8월 13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751호

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-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(제22조)
 -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기타 대상을 추가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근거 마련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8월 13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752호

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15일전”을 “15일 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”를 “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포상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「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3. 그 밖에 군수가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포상의 취소)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주요비위(금품·향응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성폭력, 음주운전 등)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
3. 법령, 조례 등의 규정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한 경우 표창 이외의 감사장, 상장 등의 취소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, 감사장, 상패,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 절차를 강화하고,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함.

◇주요내용

가.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(제10조)

- 표창장의 경우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는 근거 마련

나. 포상 수여 금지 조항 마련(제12조의2)

- 부적절한 대상자(징계자 등)가 포상을 받지 않도록 제한 규정 명확화

다. 포상 취소 규정 신설(제12조의3)
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신뢰성 제고